

국제특송 접수불가 상품 (모든 국가에 해당)

- 마약, 약(한약), 식품 (공산품 일부 가능, 충분한 성분표 첨부 시 제한적으로 가능)
- 모든 액체, 알콜 첨가 음료 : 관세, 포장용기가 병
- 동식물, 동식물 부산물 (동물가죽 (동물 보호), 면, 씨, 차, 꽃(생화) 등)
- 특별 용품 (예 : 예술품, 골동품, 보석, 금과 은): 관세, 운임, 보험료 병행 확인
- 위험물 / 위험물품 : 흥기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인 범위의 용품 ex)총, 칼
- 모피 : 직접 입고 가는 경우만 가능
- 상아 및 상아 제품 : 사고 파는 행위가 아예 금지되어 있음
- 보석, 현금 (유가증권), 신용카드, 양도성 물품
- 사람이 소지하여 운반 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물건들
- 국가의 보물 (국보), 종자류, 흙 - 실험실 증빙 서류 있는 경우 가능
- 고가의 우표 : 현금 및 양도성 물품에 속함
- 유리, 자기, 음란물(불법 영상물), 사람유골, 뼈가루
- 화기성 물질(페인트, 라이터, 알코올, 스프레이, 화기(폭죽), 화약, 총알 ...)
- 건전지, 술, 담배, 신분증(여권 - 일본), 국내취급 금지 화물
- 모터, 시계 등 타이머 부착 제품 : 폭발물 제조 부품
- 온도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물건 (꽃, 음식물,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품)

1.금지물품(손해배상 불가)

- UPU 에서 정한 금지물품(UPU 협약 제 25 조, 통상/소포 공통)
 - 마약류, 향정신성물질, 폭발성·가연성(스프레이, 향수, 부탄가스)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(리튬배터리 등), 방사성 물질,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
 -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통을 금하는 물품
 - 음식물(특히 김치), 한약, 동·식물류, 송이버섯 등

-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
- 기타 금지물품
 - 주화, 은행권,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, 송금환,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, 여행자 수표,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·은 등 보석 및 귀금속, 신용카드, 항공권, 유레일패스(EurailPass)

2.음식물

- 김치, 한약, 액젓, 고추장, 된장 등과 같은 부패성 음식물
 - 1)기후, 기온, 기압 등에 의하여 운송 중 파손의 우려가 큼
 - 2)상대국 세관에서 악취를 이유로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
 - 3)약간의 지연에도 내용물이 상하여 쓸모 없게 됨
 - 4)파손되더라도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제를 넣고 겹겹으로 포장
- 모든 음식물은 통관보류 및 불허판정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
- 보험취급 불가(지연되어 음식이 상한 경우 내용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고 우편요금만 배상(단, 통관에 의한 지연은 제외))
- 세관/운송도중 폐기시 동봉물품도 함께 파기되거나 오염우려가 있으므로 서류, 서적 등 중요물품 및 고가품과 별도 발송 권장
- 포장 방법 : 김장용 비닐 → 캔 또는 플라스틱 김치통(예:락앤락)에 70%만 채움 → EMS 포장상자(스티로폼박스는 파손위험이 높고 기계고장 유발로 포장불가)

3.선적서류, 유학서류, 상업서류(견적서, 계약서 등)

- 미 배달 시 간접적으로 손실우려가 있는 것 접수 불가
- 간접손실은 손해배상대상이 아님
 - 주소지 P.O Box 는 접수 불가

4.통관대행 불가

- 세관 계류 시 수취인이 직접 통관
- 서류도 통관 대상

5.전자제품(보험취급불가)

- 전자제품(특히,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, 컴퓨터 및 노트북, 모니터)
 - 약간의 충격에도 파손 및 기능 미 작동 우려
 - 관세문제 발생(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관세부과)
- 부득이하게 접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우편물 내부와 외부의 견고한 포장

6.기타

- 국제우편물 항공기 탑재 후에는 수출확인(전산등록)이 불가능(2014.1.6 시행)
- 음식물 관련 포장상자(사과, 배, 포도, 고구마, 감자 등이 그려진 농산물 박스)에 해당 음식물 또는 타 내용품을 포장 발송하는 경우 통관 지연
- 위험물 관련 포장상자(폭발성, 인화성, 독성가스, 전염성, 방사성 등 위험물표시 그림이 그려진 박스)에 타 내용품을 포장 발송하는 경우 항공기 탑재 불가로 반송
- 국내 운송용 포장상자가 아닌 국제운송용 포장사용